KOSHA GUIDE

C - 35 - 2011

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(MSS)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54조 (비계의 재료) 내지 제64조(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) 및 제328조(재료) 내지 제337조(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)의 규정에 따라 교량공사의 이동식비계의 설치, 이동 및 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는 추락, 낙하, 붕괴,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교량공사에서 콘크리트 현장타설에 의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(이하 "PSC"라 한다) 박스, 거더, 교량 상부구조물을 가설할 때 사용하는 이동 식 비계의 설치, 이동 및 해체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이동식 비계(Movable scaffolding system)"라 함은 콘크리트 현장타설에 의한 PSC 박스 거더 교량 상부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비계에 추진용 유압시스템을 부착하여 유압시스템의 추진력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계를 말한다. 이동식 비계에는 지지 및 이동방식에 따라 <그림 1>의 2개 비계보 방식과 <그림 2>의 3개 비계보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.